

2. 농업실습교육원 운영세칙

1. 총론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남대학교 농업실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서 관리 중인 실습장(교내실습장, 나주실습장, 장성, 보길도학술림 이하 “실습장”이라 한다)의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육원의 실습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제반 시설(온실, 하우스, 전·답작포, 수목원, 학술림, 축사 등, 이하 “시설”이라 한다)과 생산물의 사용 수익에 관하여 적용한다.

2. 교육지원

제3조(실습지원)

- ①교육원의 시설 및 생산물을 이용하여 교과과정상 학생실습이 필요한 교수는 매 실습 시작 1주일 전까지 실습장이용신청서(별지1호 서식)를 작성하여 교육원 관련 부장에게 제출하고 교육원 부장은 이를 수합하여 교육원장에게 접수한다.
- ②교육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실습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설 및 생산물 이용에 관한 사항을 승인 통보한다.
- ③나주실습장 및 보길도학술림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실습의 경우 별지3호 서식에 의한 시설(숙박)이용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④교육원장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습교육에 필요한 인력, 실습기자재 및 장비 등을 적극 지원한다.

3. 연구지원

제4조(연구지원)

- ①교육원의 시설 및 생산물을 이용하여 연구수행이 필요한 교수(이하 “담당교수”라 한다)는 연구 개시 1개월 전까지 담당교수 명의의 연구이용신청서(별지2호서식)를 교육원장에게 제출한다.
- ②교육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생산물의 이용 여부를 승인 통보한다.

제5조(지원범위)

- ①담당교수의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하여 교육원 시설 중 답작시험포는 경운, 정지 및 이앙(기계모 이앙에 한함)작업을 지원한다.
- ②전작시험포, 양묘시험포 및 사료작물시험포는 경운(정지)작업을 지원한다.

제6조(시설이용기간)

- ①시설의 이용기간은 연구과제 종료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하여 연구과제가 계속 진행되는 경우에는 매 1년마다 제4조에 의한 연구이용신청서를 만료 1개월 전까지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담당교수는 이용기간 만료 후 사용한 시설을 최초의 상태로 완전 복구하고 연구폐기물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단, 이용기간 중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도 중도에 동일한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교육원장은 담당교수가 연구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사용한 시설을 최초의 상태로 복구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원상복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담당교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실습장 관리

제7조(권리의무)

①교육원의 시설 및 생산물을 승인받아 이용하는 자(이하 “담당교수” 라 한다)는 승인받은 기간 동안 당해 시설의 이용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지며,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할 책무를 진다.

②담당교수는 시설의 형상, 형질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교육원장은 시설의 기능유지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담당교수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담당교수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교육원장의 사전 승인 받아야 한다.

⑤담당교수가 시설의 파손이나 망실을 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응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부산물관리)

①실습 및 실험연구에 따른 부산물(곡물, 채소, 과실류, 수목, 화훼류, 가축, 가금류, 가축 및 가금류의 생산물 등) 중 시료 채취 등을 위해 필요한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부산물은 교육원에 귀속한다.

②담당교수는 실습 및 실험연구 결과 부산물 생산현황을 별지4호 서식에 의거 교육원장에게 제출한다.

제9조(폐기물처리)

실험 및 연구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쓰레기 등)은 담당교수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퇴비 등으로 재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유기폐기물은 교육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위반에 대한 조치)

①담당교수의 연구가 다른 연구자의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런 상황이 예측될 때, 담당교수는 이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이 세칙을 준수하지 않은 담당교수는 교육원의 시설 및 생산물을 이용한 실험 및 연구를 향후 1년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기타) 이 세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시설 이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세칙에 의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단 승인 절차 없이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절차를 받아야 한다.

실습장 이용신청서

1. 학부(과)명	대학	학부(과)	전공
2. 담당교수	3. 교과목명		
4. 실습내용			
5. 실습장소	교내실습장	()유리온실, ()전작포, ()답작포, (),수목원, ()묘포, ()시험계사, ()인큐베이터, ()사양실험실, ()특수동물사	
	나주실습장	()과원, ()전작포, ()답작포, ()돈사, ()번식우사, ()비육우사, ()사료작물포	
	장성학술림	임반	소반, ()재배사, ()묘포
	보길도학술림	임반	소반, ()온실, ()묘포
	기타		
6. 신청면적/수량	m ²		
7. 실습기간	. . . ~ . . . (박 일)		
8. 실습인원	재학생 명, 대학원생 명(계 명)		
9. 사용관리책임자	※ 교직원에 한함 (연락처 :)		
11. 인력지원요청	()조교, ()기능인력 명		
12. 실습기자재 지원요청	작업도구	※ [별표1호] 참고하여 작성	
	기자재	※ [별표1호] 참고하여 작성	
	계측장비	※ [별표1호] 참고하여 작성	
	기타	시설명 : , 소요면적 : m ²	

위와 같이 실습장을 이용하고자 이용신청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담당교수 (인)

부장확인	
------	--

전남대학교 농업실습교육원장 귀하

[별지4호 서식]

부 산 물 생 산 현 황

1. 학 부 (과)명	대학	학부(과)	전공
2. 담 당 교 수			
3. 연 구 과 제 명			
4. 부 산 물 현 황	품명		
	생산량	_____ (단위 : _____)	
	시료채취량	_____ (단위 : _____)	
	관리단 귀속량	_____ (단위 : _____)	
	※ 생산 품목이 2 이상일 경우 별지 작성하여 첨부		
5. 연 락 처			

위와 같이 실습 및 실험연구 부산물을 생산하여 잉여 생산물을 농교원에 귀속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담당교수 (인)

전남대학교 농업실습교육원장 귀하